

- 가.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① 주류·담배 ② 환각물질
- ③ 여성가족부 고시약물
(초상에틸하운 칼라 풍서류)
- ④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가지치류, 담배 형태의 흡인제류) 등

대 상	위 반 행 위	벌 칙	과징금/ 사정명령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위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 1)·2)의 약물 또는 나목3)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조제4호가목1)·2) - 가목1)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가목2)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제2조제4호나목3) - 나목3) :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과징금 (법 제54조) 위반 횟수마다 주류·담배 판매자 각 100만원 (영 제44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약물 또는 나목1)·2)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조제4호가목4)·5) - 가목4)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가목5) : 여성가족부 고시약물(칼라풍선류) ※ 제2조제4호나목1)·2) - 나목1) :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 나목2) : 여성가족부 고시물건(레이저포인터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과징금 (법 제54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영 제44조)

대 상	위 반 행 위	벌 칙	과징금/ 시정명령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포장의무 불이행 (성가규류)	제2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 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8조제5항 - 술·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 (법 제45조) - 미 이행시 과태료 (법 제64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악물 등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8조제7항 - 청소년유해악물을 제조·수입한 자 - 청소년 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자 • 술,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악물·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 (법 제45조) - 미 이행시 과태료 (법 제64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제28조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악물 등을 포장 하지 아니한 자 ※ 제28조제10항 - 포장 의무 및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 (법 제45조) - 미 이행시 과태료 (법 제64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③ 비디오물감상실업
④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⑤ 무도학원업 ⑥ 무도장업
⑦ 사행행위영업 ⑧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성기구 취업업소, 카스방 등 산·변종업소) ⑨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⑩ 복합영상물제공업 ⑪ 경마, 경륜·경정 사업장 ⑫ 일반게임제공업 등

대 상	위 반 행 위	벌 칙	과징금/ 시정명령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제2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 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5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과징금 (법 제54조) -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 (영 제44조)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과징금 (법 제54조) -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 (영 제44조)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제6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 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 (영 제28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시정명령 (법 제45조) - 표시부착 명령, - 표시변경 명령 (영 제39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 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① 숙박업
- ② 이용업
- ③ 목욕장업
-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 ⑤ 티켓다방
- ⑥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 ⑦ 비디오물소극장업
- ⑧ 만화대여업
- ⑨ PC방 등

대 상	위 반 행 위	벌 칙	과징금/ 시정명령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단, 티켓 다방의 경우 1,000만원

• 라.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대 상	업 종	출입시간	위 반 행 위	벌 칙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노래방	22시~ 다음날 09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①항 제2호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4조 제③항 제2호)
	PC방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호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6조 제2호)
	찜질방	22시~ 다음날 05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0조 제2항 제3호)

2. 대상별 금지행위 및 적용법규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대 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징금
옥외광고물 (간판·디지털광고물·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	청소년대상 설치·부착 또는 배포 금지 (법 제19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 과태료 1차 300, 2차 500만원	
매체물에 수록· 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유해표시의무(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 과태료 1차 300, 2차 500만원	
	포장의무(법 제1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 과태료 1차 300, 2차 500만원	
	유해표시·포장훼손 금지(법 제15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설치·부착 또는 배포 금지(법 제19조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 과태료 1차 300, 2차 500만원	

I. 개요

II.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단속

III. 행정 조사

IV. 주요 질의답변 사례

참고

대 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징금
기타 유해매체물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 금지 (법 제16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위하여 전시·진열 금지 (법 제16조제2항)	시정명령 / 과태료 1차 50, 2차 100만원	
	포장대상 매체물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 금지(법 제16조3항)	시정명령 / 과태료 1차 50, 2차 100만원	
	구분·격리의무(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시정명령 / 과태료 1차 50, 2차 100만원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기에 의하여 유통목적으로 전시·진열 금지 (법 제17조2항) ※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음반·음악파일등, 신문, 잡지, 간행물	시정명령 / 과태료 1차 50, 2차 100만원	

나. 청소년유해악물·물건

대 상	청소년보호법			관련법률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 등	행정처분
술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법 제28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 술 판매의 경우 타법에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휴게·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따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4.4월 개정예정)
담배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법 제28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마다 담배판매자 100만원 ※ 담배 판매의 경우 타법에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담배사업법
				1차 2차
				7일 1개월
환각물질 (학습용, 공업용 제외), 기타 청소년 유해악물, 물건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법 제2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담배소매업소에서 담배 판매 시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청소년매체물· 유해악물· 물건 공통	청소년 유해표시 (법 제28조제7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과태료 1차 300, 2차 500만원	
	성기구등 포장의무 (법 제28조제10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과태료 1차 300, 2차 500만원	
	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법 제15조, 제60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청소년유해업소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해 업소 유형	위반 유형	형사처벌		행정처분				
		청소년 보호법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	관련법률			
					1차 위반	2차	3차	4차
일반 게임 제공업 ·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고용 금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과징금 1천만원				
	출입 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허용횟수 과징금 3백만원	게임산업법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허가 등록취 소
사행 행위 영업	고용 금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과징금 1천만원				
	출입 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행 행위 규제법)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과징금 3백만원	사행행위규제법			
					영업정지 10일~ 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 취소	
유흥 주점 · 단란 주점	고용 금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과징금 1천만원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출입 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과징금 3백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유해 업소 유형	위반 유형	형사처벌		행정처분				
		청소년 보호법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	관련법률			
					1차 위반	2차	3차	4차
비디오물 감상실험 (DVD)· 복합영상물 제공업 (멀티방) 등	고용 금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과징금 1,000만원				
	출입 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과징금 3백만원	영화비디오법			
노래 연습 장업	고용금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1회 과징금 1천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출입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과징금 3백만원	음향산업법			
무도 학원업 · 무도 장업	고용금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과징금 1천만원	등록취소 영업폐쇄			
	출입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과징금 3백만원	영업정지 7일 (청소년실 외의 객실 출입)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 취소 영업 폐쇄
전화방 · 화상 채팅방	고용금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과징금 1천만원				
	출입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과징금 3백만원				
성기구 취급 업소	고용금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과징금 1천만원				
	출입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과징금 3백만원				

〈2〉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유해업소 유형	형사처벌		행정처분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률	청소년보호법	관련법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배달을 주로 하는 다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과징금 1000만원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		
소주방· 호프· 카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과징금 5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		
여관·여인 숙 등의 숙박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과징금 500만원				
안마실 있는 목욕장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과징금 500만원				
이용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과징금 500만원				
비디오물 소극장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과징금 500만원				
게임 제공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과징금 500만원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과징금 500만원				
유독물 제조·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과징금 500만원				
만화 대여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과징금 500만원				

〈3〉 기타 청소년유해업소

유해 업소 유형	위반유형	형사처벌/과태료		행정처분				
		청소년보 호법	관련법률	청소년 보호법	관련법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찜질방	청소년출입시간 제한 위반				공중위생법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 명령
비디오물 소극장업	청소년출입시간 제한 위반		영화비디오법		영화비디오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업	청소년출입시간 제한 위반		음악산업법		음악산업법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청소년출입시간 제한 위반		게임산업법		게임산업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청소년게임제공 업자가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유해 업소 유형	위반유형	형사처벌/과태료		행정처분				
		청소년보 호법	관련법률	청소년 보호법	관련법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일반게임 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출입 허용 제외)의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게임산업법		게임산업법			
		과태료 1,000만원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등록 취소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복합유통게임제 공업자가 주류보관, 반입을 허용· 묵인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복합유통게임제 공업자가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유해 업소 유형	위반유형	형사처벌/과태료		행정처분				
		청소년보 호법	관련법률	청소년 보호법	관련법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라. 청소년유해행위

유해행위 유형 (법 제30조)	형사처벌		행정처분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	관련법률			
				1차	2차	3차	4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1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공중위생관리법 (성매매알선,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알선·제공)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취소, 영업 폐쇄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호)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제4호)	5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5호)	5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유해행위 유형 (법 제30조)	형사처벌		행정처분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	관련법률			
				1차	2차	3차	4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7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300만원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8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3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 명령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제9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1,000만원				